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## [울곡로(창경궁앞) 도로구조 개선사업]

- 점검일시 : 2022.02.25 (금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이상욱A,최영준

### 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1-1) 승강기 설치작업장 비계구간에 작업발판은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자 이동간에 전도, 추락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고정 조치하기 바람,
- 1-2) 시점방향(승강기) 외부비계 진입구간은 작업자 이동시 안전난간이 통행에 간섭되고, 승강용 사다리를 계단으로 사용할 경우 추락 재해 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용을 금지하고 별도의 통로를 확보하여 관리하기 바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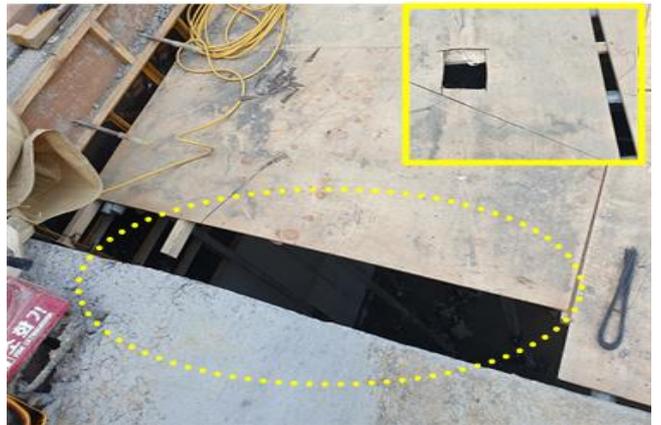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



### 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토목부)

- 2) 승강기 시설 작업구간에는 구조물과 슬래브 사이에 개구부가 발생되어 있어 작업자 전도, 낙하물발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니 조치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토목부)

- 3-1)철근자재 인양작업장에서는 길이가 다른 철근 자재를 철사로 묶음 처리하여 인양하는 상황이 목격되었고 작업자가 자재 인양 하부로 이동, 낙하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,
- 3-2)자재 하역구간에서는 공간협소, 신호체계 미흡으로 인한 혼선이 발생하여 자재와 작업자 간 충돌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으니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작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유도자,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관리하기 바람.
- 3-3)또한, 인접 승강기 설치구간 통로상에는 낙하우려가 있는 자재등방치되어 있어 하부 작업장으로 낙하될 우려가 있으니 제거(이동)조치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(크레인 작업시의 조치),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4-1) 카고크레인을 이용한 자재 인양 작업중에 주변 지장수목과 간섭되는 일이 발생되었고,
- 4-2) 시점부 계단 설치구간에서는 경사구간에서 건설기계와 작업자간 근접작업으로 장비와의 충돌, 접촉 등의 안전사고발생시 우려가 높으니 작업구간 조정 등의 작업방법을 개선하고 전 작업장 건설기계 조종원과 작업자를 대상으로 사



고사령 중심의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.  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  
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
